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3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임호선 · 진선미 · 문정복
김재원 · 정춘생 · 백선희
박은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허가는 교육·연구의 발전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3(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허가는 교육·연구의 발전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